시흥도시공사 상임이사(본부장) 모집 공고

시흥도시공사 상임이사(본부장)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,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6년 11월 16일

시흥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

1. 상임이사 모집 예정직위 및 예정인원

예정직위	예정인원	주요 직무
상임이사 (경영시설본부장)	1명	➢ 사장을 보좌하고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분장 ➢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공사 경영전반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

2. 임명기간 및 보수

❍ 임명기간: 임명일로부터 3년

❍ 보　　수: 공사 사규에 따름

3. 직무수행요건: 공사 홈페이지 채용정보에 첨부파일(별첨) 확인

4. 응시자격

❍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결격사유 및 시흥도시공사 임원인사규정 제4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**다음 자격요건을 갖춘 자**

1) 토지, 도시 및 주택분야 등 공사 업무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경영관리 능력과 리더십이 있는 자
2) 지방공기업 상임이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
3) 조직의 경영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
4)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을 갖춘 자
5) 기타 위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

5. 결격사유

지방공기업법 제60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,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.

1. 삭제
2. 미성년자
3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4.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6. 삭제

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(제3호는 제외한다)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1조 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
③ 공사의 직원이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
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 공사에 제공할 수 있다.

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 ·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·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. 취업제한

시흥도시공사 임원인사규정 제4조의3(취업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동안 공사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에 해당하는 경우
2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. 다만,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7. 지원 서류 접수

❍ 접수기간: 2026. 11. 16.(월) ~ 2026. 12. 1.(화) 18:00 까지

- 접수시간: 09:00~18:00 내 접수 / 토요일 및 일요일 접수 불가

❍ 접수방법: 방문 또는 우편접수(접수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)

- 접수처: 시흥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(공사 본부 4층 인사교육부)
  (14992)경기도 시흥시 시흥대로 268번길 8, 4층

❍ 제출서류

1. 지원서(소정양식) 1부.
2.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(소정양식) 각 1부.
3.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.
4.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부.
5. 취업심사 대상자 “취업심사” 결과 증빙서류 1부.(대상자에 한함)

- 시흥도시공사는 ‘취업심사 대상기관’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자의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‘취업가능’ 또는 ‘취업승인’ 결정문서를 최종 임용일 전까지 제출

※ 소정양식은 공사 홈페이지(http://www.shsi.or.kr) 채용공고문에서 확인

8. 임명절차 및 선발심사 방법

구분	주요내용
서류심사	➢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후 면접심사 대상자 결정 ※ 서류심사 합격자는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
면접심사	➢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심사 실시 - 전문성, 리더십, 경영혁신, 노사화합 및 친화력, 윤리관 등 심사 ※ 면접심사는 임원추천위원회 결정에 따라 생략 가능
후보자 결정	➢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, 최종 후보자 수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함 ※ 면접심사 생략의 경우 서류심사 결과에 의함
임명	➢ 임명장 수여

9. 기타사항

- ❍ 지원자가 모집인원의 2배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재공고 등을 실시하며, 이 경우 기존 지원자는 유효합니다.
- ❍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결과 선발직위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,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.
- ❍ 우편접수자는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 유무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,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.
- ❍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❍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❍ 임용대상자로 결정된 후라도 신원조회 또는 취업심사 결과 결격사유 등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.
- ❍ 지방공기업법 제61조(임직원의 겸직 제한)에 따라 임용 후 겸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❍ 임원추천위원회 업무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❍ 기타 문의사항은 시흥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(인사교육부, ☎031-488-681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